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지침

2011. 01. 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에 있어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생명윤리를 존중하며, 연구 피험자의 인권 보호와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및 실험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위조(偽造)"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變造)"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剽竊)"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의 부당 사용, 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과장 홍보, 조사 방해 행위,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비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연구진실성"이라 함은 연구의 수행 및 결과 도출 등 전 과정에 있어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여기서 "연구"라 함은 대학에서 수행되는 모든 학문활동을 말한다.
6.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7. "인체유래물"이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서 개인식별정보는 연구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학에 소속된 교원, 연구자 및 학생이 수행하는 연구와 대학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 (연구진실성위원회)

- ① 대학은 소속된 모든 교원, 연구자 및 학생이 수행하는 연구 및 대학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임무,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책무, 회의 소집과 의결, 심의 대상 사항, 회의록 작성, 예산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① 대학은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심의와 감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임무,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책무, 회의 소집과 의결, 심의 대상 사항, 회의록 작성, 예산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산하에 생명윤리법에서 정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임무,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책무, 회의 소집과 의결, 심의대상사항, 회의록 작성, 예산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① 대학은 대학 내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 회의 소집과 의결, 권한 및 책임,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승인 및 조치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 ① 대학은 대학 내 실험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심의 사항, 의결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기관 등의 역할과 책무

제8조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의 역할과 책무)

- ①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을 지적 탐구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창의적, 자율적, 합리적 연구 및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해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학문후속세대로서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대우하고 공정하게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는 연구 전 과정 및 연구결과의 도출과 발표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대학의 연구윤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원 및 학생의 역할과 책무)

- ① 연구원 및 학생은 대학의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학문적 연구 활동의 수행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 및 학생은 연구 전 과정의 수행에 있어 대학의 연구윤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 ③ 연구원 및 학생은 동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의 역할과 책무)

- ① 기관의 장은 기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가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창의적 연구로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과 실험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연구진실성의 확보, 피험자의 인권 보호,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및 실험실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취를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및 제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의 책무)

-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연구계획서 및 연구 결과물에 적절하게 밝혀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정당하게 배분·사용·관리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학문의 자유와 연구진실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의 확보

제12조 (원칙)

- ① 대학의 모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작성함에 있어 정직성, 진실성, 공정성 및 이해상충 방지의 의무를 가진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에서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의 전 과정의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이나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의미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 정직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본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자신의 경력, 연구 행위 및 결과를 허위로 공표하거나, 과장·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데이터 및 연구노트의 기록 및 보관)

- ①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원은 연구데이터 및 연구노트의 정직한 기록 및 보관의 책임을 가진다.
- ② 연구데이터는 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자료를 말하며 연구의 독자성(originality)을 증명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③ 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이차 자료는 학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연구데이터 및 연구자료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⑤ 연구노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며 연구자 자신뿐 아니라 연구실 내 지식의 전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연구데이터는 제본된 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서면에 준하는 기록 인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는 연구 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데이터는 노트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 및 방법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⑥ 보완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는 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구노트에 기록된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타인의 성과물 이용)

-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비롯한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이미 게재(연구계획서, 학술지 게재 목적 심사용 논문 및 게재 예정인 논문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물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비롯한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아이디어, 연구자료, 연구데이터 및 문장 표현 등 연구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연구결과물의 정확한 출처나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정확한 출처나 인용 표시를 하고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단, 리뷰논문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물이 이미 교과서 및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자신의 성과물 이용)

-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이미 게재되거나 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출판)

- ①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참여 연구원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 전 과정의 수행, 연구데이터 및 연구자료의 수집·관리·해석, 연구결과물의 분석 및 정리, 연구결과물의 초안 작성, 최종본 승인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해당 연구결과물의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포함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③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의 합의에 따라 결

정하고 이러한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

- ① 대학은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다.
- ②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의 책임이 있다.
- ③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여부 및 위반 정도는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5장 피험자 등의 보호

제18조 (원칙)

- ① 연구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이하 '피험자 등')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피험자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 및 연구 환경이 피험자 등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피험자 등에게 미치는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피험자 등은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동의 과정이나 위험 및 이익 등에 관련하여 배려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⑤ 피험자 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19조 (연구계획서 심의)

-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려는 연구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의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동일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에 대하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심의와 감독, 생명윤리 강령, 가이드라인, 심의 기준 등을 제정·시행 및 생명윤리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20조 (동의)

- ①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피험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 목적
 2. 피험자 등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3. 피험자 등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4. 피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인체유래물등의 보존·제공·폐기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6.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피험자 등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피험자 등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피험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피험자 등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피험자 등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④ 연구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 제공)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참여 및 수행을 위해 피험자 등으로부터 획득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
-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화하여야 한다. 단, 피험자 등이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① 연구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및 그로부터 얻어진 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
-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경우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실비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연구자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 ① 연구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하며, 폐기에 관한 사항은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실험동물의 복지와 보호

제25조 (동물실험의 사전심의) 살아있는 척추동물(이하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이하 '동물실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대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동물실험의 원칙)

- ① 실험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사용하는 연구자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실험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동물실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실험동물의 사용)

- ①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우수한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관리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 마취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

이 안락사하여야 한다.

제28조 (실험동물의 관리 등)

- ①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는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관계 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실험실 안전 관리

제30조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내 인적·물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연구자 및 학생은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험실 안전점검 등)

- ① 연구자는 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일상점검(매일 1회), 정기점검(매년 1회 이상) 및 특별안전점검(필요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험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실험실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 및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실험실의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 ①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의 경우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관계 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 시행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 등의 연구윤리 지침 및 기준을 적용한다.

